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4월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4월 27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무지개회의실

기록 : 장한결

<회의 순서>

1. 개회선언

『총 이사 21명 중에 16명 참석』의 성원을 확인하고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함

2. 이사장 인사말

3. 보고: 장한결 보고함 / 자활보고: 심상원 센터장 보고함

1) 위원회 활동보고

<이용위원회, 서안성운영위원회, 건강마을위원회, 경영위원회, 내건물갯기추진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인사위원회>

-서면 중심 보고

4. 심의 안건

[1호 의안] 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가구원 승인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가구원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동법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이 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0년 01월에 가입된 조합원의 가구원들을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3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16명-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3/9	7239	김은희	831122-6	안성시 2동 도기동
2	3/3	7237	나성천	641116-1	안성시 미양면 보체
3	3/13	20779	이충용	790520-1	안성시 공도읍 양기
4	3/27	7242	정석훈	781216-1	안성시 3동 당왕동
5	3/3	7236	정호곤	790423-1	안성시 공도읍 양기
6	3/12	20778	최종현	800129-1	안성시 2동 계동 셋
7	3/10	7240	홍신호	610202-1	안성시 금광면 신양
8	3/13	20779	이에서	100108-4	안성시 공도읍 양기
9	3/3	7237	이정순	670303-2	안성시 미양면 보체
10	3/27	7242	정서윤	050630-4	안성시 3동 당왕동

11	3/3	7236	정시현	091119-3	안성시 공도읍 양기
12	3/10	7240	홍지윤	921118-2	안성시 금광면 신양
13	3/3	7237	나한솔	910921-2	안성시 미양면 보체
14	3/3	7236	정시아	111205-4	안성시 공도읍 양기
15	3/27	7242	정지윤	070318-4	안성시 3동 당왕동
16	3/27	7242	정하윤	140103-4	안성시 3동 당왕동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2호 의안] 발안신용협동조합 자금 용자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내 건물 갖기를 통한 본점이전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자산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발안신협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차입계획을 검토 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차입계획

- ▶ 차 입 기 관 : 발안신용협동조합
- ▶ 대 출 금 액 : 일금 삼 억 원(300,000,000원)
- ▶ 대 출 금 리 : 신용 연1.0% 이내(경기도자금)
- ▶ 대 출 기 간 : 6년(1년 거치)
- ▶ 상 환 방 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논의사항]

- 우리 자금상황은 어떠한가?
- 현재 자금상황이 나빠졌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개월 동안 매출이 많이 줄었다. 매출이 줄어든 만큼 현금 유동성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된다.
- 새롭게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
-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안신협에서의 용자는 더더욱 필요하다. 대출 금리도 매우 좋은 조건이어서 발안신협에서 차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승인해 주시겠는가?
- 모든 조건을 볼 때 승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승인하는 것에 동의한다.

[결정사항]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3호 의안]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개정의 건

- ▶ 제안 설명 : (인사위원회) 1년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운영규정의 조항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명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개정안을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안

이전 규정	개정 안	비고
<p>제4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p> <p>1.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p> <p>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p> <p>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p> <p>③ <u>휴게시간은 1일 1시간으로 하고 개별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u>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4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p> <p>1.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p> <p>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p> <p>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p> <p>③ <u>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 이내로 한다.</u></p> <p>④ <u>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u>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일 단위, 주 단위 명시 휴게시간 기준 명확히 수정</p>
<p>제51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p> <p>1. 조합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u>야간근로</u>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p> <p>2.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조합에서 정식으로 연장근로를 명한 시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무 명령 없이 근무할 경우 이는 일체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제51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p> <p>1. 조합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u>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로 한다.</u></p> <p>2. <u>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u></p> <p>3. <u>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u></p>	<p>연소자 · 산부 · 임부의 연장근로 제한사항 보완</p>
<p>제59조 (주휴일)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전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p>	<p>제59조 (휴일)</p> <p>1.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전주간의 소</p>	<p>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p>

<p>자는 무급주휴일로 한다.</p>	<p>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주휴일로 한다.</p> <p><u>2. 조합은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u></p> <p>① <u>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u></p> <p>② <u>1월 1일</u></p> <p>③ <u>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u></p> <p>④ <u>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u></p> <p>⑤ <u>5월 5일 (어린이날)</u></p> <p>⑥ <u>6월 6일 (현충일)</u></p> <p>⑦ <u>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u></p> <p>⑧ <u>12월 25일 (기독탄신일)</u></p> <p>⑨ <u>「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u></p> <p>⑩ <u>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u></p> <p>⑪ <u>「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u></p>	
<p>제60조 (약정휴일)</p> <p>1. 조합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유급휴일을 지급할 수 있다.</p> <p>① <u>명절 (신정 1일, 구정 3일, 추석 3일)</u></p> <p>② <u>공휴일</u></p> <p>③ 조합원의 날</p> <p>④ <u>임시 공휴일</u></p> <p>2.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p>	<p>제60조 (약정휴일)</p> <p>1. 조합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유급휴일을 지급할 수 있다.</p> <p>① 조합원의 날</p> <p>2.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p> <p>3.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p>	<p>근로기준법 개정</p>

<p>3.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p>	<p>다.</p>	
<p>근로기준법 시행령</p> <p>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p> <p>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p> <p>[제목개정 2018. 6. 29.]</p> <p>[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p> <p>나. <u>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u></p> <p>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p> <p>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p> <p>1. <u>일요일</u></p> <p>2. <u>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u></p> <p>3. <u>1월 1일</u></p> <p>4. <u>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u></p> <p>5. <u>삭제 <2005. 6. 30.></u></p> <p>6. <u>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u></p> <p>7. <u>5월 5일 (어린이날)</u></p> <p>8. <u>6월 6일 (현충일)</u></p> <p>9. <u>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u></p> <p>10. <u>12월 25일 (기독탄신일)</u></p> <p>10의2. 「<u>공직선거법</u>」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p> <p>11. <u>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u></p>		
<p>제64조 (유급경조휴가)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줄 수 있다.</p> <p>1. 축하휴가</p> <p>④ <u>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 회갑 (1일)</u></p>	<p>제64조 (유급경조휴가)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줄 수 있다.</p> <p>1. 축하휴가</p> <p>④ <u>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 칠순 (1일), 이 경우 경조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유급경조휴가를 지급한다.</u></p>	<p>시대흐름 반영 및 명확히 개정</p>

<p>제90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p> <p><u>8.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9.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90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p> <p><u>8항 삭제</u></p> <p><u>9항 삭제</u></p>	<p>불필요한 조항</p>
<p>제93조 (산전, 산후휴가)</p> <p><u>3. 조합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u></p> <p><u>8. 조합은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u></p>	<p>제93조 (임산부의 보호)</p> <p><u>3. 조합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u></p> <p><u>8항 삭제</u></p>	<p>제3항의 임부의 시간외 근로 금지는 제 51조로 이동하여 규정</p> <p>제8항 유해 위험업종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은 제91조에 규정되어 중복</p>
<p>제94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p> <p>1. 조합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p>	<p>제94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p> <p>1. 조합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p> <p><u>① 임신 28주까지 : 4주 1회</u></p> <p><u>②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 1회</u></p> <p><u>③ 임신 37주 이후 : 1주 1회</u></p>	<p>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기 명시</p>
<p>제98조 (난임치료휴가)</p> <p><u>3.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98조 (난임치료휴가)</p> <p><u>3항 삭제</u></p>	<p>불필요한 조항</p>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4호 의안]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축근로 규정 제정의 건

- ▶ 제안 설명 : (인사위원회)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축제도 관리규정이 필수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관리규정을 만들고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바 다음의 규정을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

제1조(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15~35시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단축사유)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본인휴식 등에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단축신청)

- ①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단축승인) 인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제5조(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조합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한다.

제7조(근태관리) 단축 근로자 근태관리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한다.

제8조(통상 근로의 복귀)

- ① 단축 근로자는 단축기간이 만료한 경우 통상 근로로 복귀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9조(임금 등)

- ① 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 단축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제11조(인사평가의 적용)

- ① 단축 근로자의 인사평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타 인사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조합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경력기간 산정)

- ① 단축 근로자의 경력기간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타 명시되지 않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사 용 자 _____
근 로 자 대 표 _____

<참 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개요) 긴급 자녀돌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 ② 주 15~35시간으로 단축 ③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외), 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⑥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로자 ⑦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단축근무하는 요일은 고정되어야 함)

(적용기간) 6월 30일까지 단축 근무자 한시 적용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 단축제도 이용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 및 신청서를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

지원수준 인상내용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주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	--------	--------	---------

[논의사항]

- 근로자가 근무시간은 단축하지만 단축한 것에 대해서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관리 규정은 기본 포맷으로 나와있는 것에 특수하게 우리 상황을 반영시킨 정도라고 보면 된다.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다.
-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기타안건 1] 가와사키 의료협동조합 구호 물품 지원 논의의 건

- ▶ 제안 설명 : 매체에서 일본이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성의료협동조합이 생기고 초창기부터 가와사키 의료생협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와사키 의료협동조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구호물품이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세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사항]

- 가와사키 의료생협 이사장님과 통화를 했다. 그 쪽 상황이나,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좋겠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단 마스크는 법적으로 해외 반출이 아예 되지 않아 해줄 수 없다고 전달했다. 방호복은 우리가 직접 전달해줄 수 있다. 때마침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사의련)에서 일본에 있는 민의련 쪽에 방호복을 전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에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방호복과 가와사키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해주면 어떨까 싶다. 방호복과 페이스 실드 등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해주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구호물품과 운반비를 합산해 3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함께걸음 의료사협에서도 100만원 정도 하고 싶다고 얘기가 되어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함께 400만원을 하면 어떨까 싶다.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한다.
- 무슨 예산으로 하려는 것인가?
-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추경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님께서도 걱정이 있어서 감사님께 미리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보았다. 권용일 감사님과 통화해보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다.
- 모아진 기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아진 기금으로 물품을 사서 보낸다는 것인가?
-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사의련 쪽에 돈을 주고 사의련 쪽에서 일부 가와사키로 보낼 것을 확보한 다음 민의련에 가와사키 것까지 같이 가서 민의련에서 가와사키 측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품이 가는 것이다.
- 가와사키에 물품을 보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잘 교류하지 않고 있다가 외국에 있는 의료협동조합에 보내는 것이 어떨겠는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일본 전체보다도 가와사키 의료협동조합과 초창기 부터 교류를 해왔고 우리도 예전에 그 쪽에서 초청을 해서 받은 것들도 있고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보답 차원에 진행하는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 부담스러우시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조합원, 임직원 분들이 조금씩 기부를 해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민감한 것이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가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 공식 예산으로는 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인정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다.
- 모금을 언제까지 한다라고 기한까지 논의했으면 한다.
- 1차 구호물품을 보내는 것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진행이 될 것이다. 2차 구호물품 가는 일정 에 맞춰 우리도 보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대략적으로 10일 이내에 2차 구호물품이 가지 않을까 싶다. 시기에 너무 엄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하다.
- 안성의료사협의 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 홍보를 했으면 좋 겠고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마음 달는 만큼만 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다.
- 모금을 언제까지 하면 좋겠다는 시한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금을 진행했으면 한다.
- 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인가?
- 생각했던 금액이 300이지 꼭 정할 필요는 없다.
- 모금되는 상황을 보고 전달하면 될 것 같다.
- 기한은 길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2주정도 하면 어떨까 싶다.

[결정사항] 전체 조합원 대상 모금 운동을 진행하여 2주 안에 가와사키 의료협동조합에 기부 하는 것으로 결정

[기타안건 2] 하절기 이사회 시간 논의의 건

[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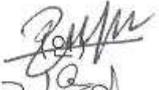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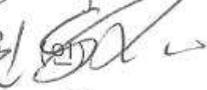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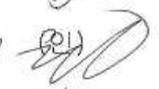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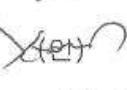
- 하절기 이사회 시간이 7시부터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계속해서 6시 30분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 6시 30분부터 한다고 해서 참석 못하는 분이 생기면 안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정해진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정해진대로 했으면 한다.
- 축산업이나 농사를 하는 이사님들은 6시 30분은 너무 이른다. 이사회에 참석하려면 모든 일을 2시간 전부터 해야한다.

[결정사항] 동절기(11월~4월)에는 6시 30분, 하절기(5월~10월)에는 7시에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이것으로 모든 안건과 기타사항까지 논의를 마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사회는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7일

-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박종기 
- 이사 : 권응의 
- 이사 : 이응자 
- 이사 : 유희재 
- 이사 : 신자원 
- 이사 : 최철중 
- 이사 : 심상원 
- 이사 : 최영래 
- 이사 : 유정현 
- 이사 : 이애순 
- 이사 : 고성봉 
- 이사 : 이인영 
- 이사 : 양준형 
- 이사 : 김재명 
- 이사 : 안근모 
- 이사 : 김유환 
- 이사 : (인)
- 이사 : (인)